

김혜란 연구원

요약

미국 와튼스쿨은 코로나19가 미국인들의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음.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부족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은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 및 기대수명 감소 우려의 요인은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-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 와튼스쿨은 코로나19가 미국인의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¹⁾
 - 설문조사는 35~83세의 미국인 5,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설문 참가자들의 절반은 자녀가 없는 가상의 60세 독신 남성(여성)에게, 나머지 절반은 40세 독신 남성(여성)에게 은퇴저축 수준과 연금화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설계됨
-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대한 인식변화가 경제적 압박,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, 기대수명 감소 우려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해 취약한 그룹과 영향이 크지 않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함(표 1) 참조
 - 기대수명 감소 우려는 주어진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보고 확률에서 객관적인 확률을 뺀 값으로 판단함

〈표 1〉 참가자 특성과 코로나19로부터 발생되는 각각의 가능성과의 관계

내용	연령	성별(남성)	기혼	건강함	교육수준	고소득	금융이해력 점수	수리 점수
자금부족 가능성	-		-	-	-	-	-	-
감염 가능성	+	-	-	-	+		-	-
사망 가능성	+		-	-			-	-

자료: Hurwitz et al(2021)

1) Hurwitz et al(2021), "Longevity Perceptions and Saving Decisions during the COVID-19 Outbreak: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"

-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와 기대수명 감소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코로나19로 자금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은퇴 저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 응답자 비중이 19.7%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은퇴자산을 연금화하라는 응답자 비중도 13% 낮은 것으로 나타나,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압박 여부가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 -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은퇴저축 수준 및 연금화 여부에 대한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
 -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가능성의 차이는 은퇴저축 수준에 대한 인식변화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,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을 때 연금화에 대한 조언을 12%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TIAA(2020)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은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, 이러한 변화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²⁾
 - TIAA(2020)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미국인의 78%는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, 이 중 33%는 고용 상태의 변화를 겪었으며, 18%는 비상 자금을 사용하였고, 26%는 새로운 부채를 차입하였음
 - 응답자의 91%는 은퇴준비가 재정적인 목표라고 하였으나, 실제로는 40%만이 계획대로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
 - 계획대로 은퇴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30%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

-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은퇴 자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, 이러한 정책은 저축 및 연금을 소홀히 하여 장기적으로 은퇴 보장을 약화시키고,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
 -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스라엘, 미국, 호주, 칠레, 페루 등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음
 -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개정된 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”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2) TIAA(2020. 10), “TIAA Financial Resiliency Survey”